

##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### □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지원

### □ 주요골자

- 다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면제
  -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, 동기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
  - 상이군경 및 그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, 취득, 동기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